

美, 아동용 제품에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화 움직임 등

국내 · 외 리콜현황 및 정책동향



국내 · 외 리콜현황

	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37건(강제 37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10건, 공산품 7건, 어린이용품 20건 		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12건(강제 79건, 자발 33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26건, 공산품 41건, 어린이용품 45건
	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20건(자발 20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7건, 공산품 7건, 어린이용품 6건 		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4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5건, 공산품 7건, 어린이용품 2건
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9건(자발 19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7건, 공산품 11건, 어린이용품 1건 		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3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2건, 공산품 1건
	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13건(자발 13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용품 6건, 공산품 3건, 어린이용품 4건 			

주요 사례

국가	제품명	제조사	리콜방법	리콜구분	리콜 주요원인
한국	유모차	한일레인보우	수거, 교환	강제적 리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납 초과 검출 모델명 : 스퀘어 디렉스유모차
미국	헤어 드라이기	AG Professional Hair Care Products Ltd.,	환불	자발적 리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물에 젖을 경우 감전 위험 모델명 : AG Hair
일본	자전거	주식회사 AKIBO	수거, 교환	자발적 리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레임의 이상이 있는 제품이 혼입 모델명 : Verge X20 등 6종
캐나다	유아용 침대	Bednest Ltd.	사용 중지	자발적 리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소 높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아 낙상 위험 모델명 : 미상
EU (프랑스)	토스터	So Techwood	소비자 경고	자발적 리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재 위험 저전압지침, EN60335 불이행 모델명 : YK-623, TGP-602
호주	핸드폰 충전기	Yatama Technology	사용 중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모델명 : PB017
뉴질랜드	산악용 자전거	WH Worrall & Co	부품 교환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론트 허브 불량으로 인해 사용 중 소비자 낙상 위험 모델명 : 2015 GT FURY ELITE, 2015 GT FURY EXOERT



■ NITE, 정수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 사고 주의 환기

- 일본 NITE(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는 23일, 정수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개최함
 - 정수기 내부에는 항상 70°C~90°C의 뜨거운 물이 비축되어 있으며, 영유아가 급수구를 가지고 놀 때 어린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뜨거운 물이나와 화상 사고로 이어지기 쉬움
 - NITE는 14년도에 '정수기의 어린이 잠금장치에 관련된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사(경제산업성 위탁사업)'를 실시하여,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수기 사용자 및 점포·공공시설 등의 정수기 설치 관리자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 환기를 실시키로 함

〈주된 사고 사례〉

- ▶ 영유아가 정수기 온수용 급수구를 가지고 놀다가 어린이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분출된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음
- ▶ 정수기 설치 시 급수구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온수용 급수구를 가지고 놀 때 급수구 전체가 떨어져 나가 분출된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음
- ▶ 정수기의 어린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사용 후, 어린이 잠금장치 버튼이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아 영유아가 만졌을 때 분출된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음

〈공공시설 정수기 설치 관리자에 대한 주의환기〉

- ▶ 정수기를 설치할 때에는 직원이 항상 감시할 수 있으며,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것
- ▶ 정수기 앞에 울타리 등을 마련하여 영유아 스스로 정수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
- ▶ 손님이 올바른 조작방법·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본체에 조작방법·주의사항 등을 표기하고, 화상 사고 주의 리플렛 등을 정수기 주변에 비치할 것

〈정수기 제조·수입사업자용 대응책〉

- ▶ 온수용 급수구의 급탕시 필요한 힘을 영유아가 쉽게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절할 것
- ▶ 어린이 잠금장치는 영유아가 쉽게 해제할 수 없는 힘 및 조작 방법 등을 채용할 것
- ▶ 급수 버튼 및 잠금장치 해제 버튼의 위치를 가능한 한 높은 곳에 비치하거나 버튼 표면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설치하는 등, 영유아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할 것
- ▶ 온수용 급수구, 레버 및 어린이 잠금장치의 색을 한색계열로 하여 주목성을 떨어뜨리게 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잃게 할 것

■ 美, 아동용 제품에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화 발의

- 美 미네소타 주, 우선순위 화학물질(Priority Chemicals)이 포함된 아동용 제품에 경고표시 의무화 움직임을 보임
 - * 우선순위 화학물질 : 미네소타 보건부가 지정한 화학물질로서, 고위험 화학물질 중에서도 미국 연방환경청(EPA)이 지정한 대량생산물질에 해당하며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주요 유해물질
- ▶ 기준 : 해당 물질이 모니터링을 통해 ① 혈액, 소변, 모유 등 체액에서 발견되었거나 ② 어류, 야생동물,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③ 샘플링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먼지, 실내공기, 식수 또는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
- ▶ 현재 3종의 프탈레이트(BBP, DBP, DEHP), 납, 카드뮴, 2종의 난연제(HBCD, decaBED), 포름알데히드 등 9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음
 - 민주당 소속 주하원 의원 5명은 '15년 3월 9일, '우선순위 화학물질'을 포함하는 아동용 제품에 의무적으로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
 - 이 법안은 '09년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인 '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법'의 규제수위를 강화한 것으로,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 중임
- ※ 해당 법률은 12살 미만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 전체에 적용되며, 시행될 경우 우선순위 화학물질이 포함된 아동용 제품을 제조·유통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에 경고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